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6.	16.
개정	2016.	7.	19.
개정	2017.	4.	3.
개정	2017.	8.	28.
개정	2018.	2.	5.
개정	2019.	1.	31.
개정	2019.	7.	24.
개정	2020.	2.	11.
개정	2020.	7.	29.
개정	2022.	1.	24.
개정	2023.	3.	23.
개정	2023.	5.	4.
개정	2023.	9.	11.
<u>개정</u>	<u>2026.</u>	<u>00.</u>	<u>00.</u>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합체육대회를 매년 국내에서 개최한다.

② 종합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 명칭은 「경기인등록규정」 제18조의 등록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6. 16., 2022. 1. 24. 2023. 3. 23, 2023. 9. 11.>

1. “종합체육대회”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전국 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말한다.
2. “전국체육대회”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의 전문체육 목적으로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한다.
3. “전국동계체육대회”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의 육성 목적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전문체육 목적으로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한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의 육성 목적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를 대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한다.
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란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된 종목의 육성 목적으로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생활체육 목적의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 3 조(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①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

및 마케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 00. 00.>

② 제1항의 권리에는 방송·미디어·콘텐츠 권리, 지식재산(IP) 권리, 광고 및 브랜딩 권리, 티켓 및 호스피탈리티 관련 권리, 데이터 및 기록 활용 권리 등이 포함된다. <신설 2026. 00. 0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6. 00. 00.>

제4 조(대회 횟수) ①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0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6. 6. 16., 2022. 1. 24.>

②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에 합산한다. <신설 2016. 6. 16., 개정 2022. 1. 24.>

③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1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실제 개최한 대회를 기준으로 횟수를 산정한다. <신설 2016. 6. 16., 개정 2022. 1. 24.>

제5 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전국체육대회는 10월 중에,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중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중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토요일부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6. 16.>

② 전국체육대회 기간은 7일, 전국동계체육대회는 4일, 전국소년체육대회는 4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6.>

③ 체육회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연도에는 종합체육대회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④ 삭제 <2017. 8. 28.>

⑤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개최지는 대회기간을 체육회와 협의한 후, 개최년도 전년 1월 31일까지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3. 23., 개정 2026. 00. 00.>

[제목개정 2022. 1. 24.]

제 6 조(경기행사제한) 전국체육대회 개최일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체육회 회원단체와 그 산하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제 7 조(대회상징마크) ①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상징마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 24.>

② 대회 상징마크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대회표어) ① 전국체육대회 표어는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으로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대회가) ①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의 대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대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4. 3.>

③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대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4. 3.>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삭제 2026. 00. 00.>

제11조(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대회엠블럼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삭제 2026. 00. 00.>

제 2 장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제13조(설치) 체육회 정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 4. 3., 2022. 1. 24.>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1. 31.>

1.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대회엠블럼 등과 이를 사용한 휘장사업에 대한 승인
5.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삭제 <2019. 1. 31.>

제15조(조직) ① 위원회 위원은 체육, 문화, 언론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19., 2017. 4. 3., 2019. 1. 31.>

②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시·도의 회원시·도체육회의 장은 각 대회와 관련하여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장은 추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6., 2022. 1. 24.>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 4. 3., 2019. 1. 31., 2020. 2. 11.>

1. 정관 제45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24.>

2. 삭제 <2019. 1. 31.>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 1. 31.>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31.>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 1. 31.>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회 개최지 회원시·도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시·도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31., 2022. 1. 24. 2023. 3. 23>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 31.> <개정 2022. 1. 24.>

제3장 개최지 선정

제18조(전국체육대회 등의 유치신청) ① 전국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회원시·도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 5년 전에 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1.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포함)
4. 선수단의 숙박 및 수송과 관련한 계획
5.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있는 곳의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호텔 포함)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신청 회원시·도체육회는 유치신청에 대한 유치 시·도의 전반적인 조사, 정보수집, 평가 등의 활동을 위한 경비로 유치신청금을 체육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2023. 3. 23.>

④ 유치신청금은 체육회 수입금으로 처리되며, 유치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유치신청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지침을 따른다.<신설

2023. 3. 23.>

⑤ <삭제 2026. 00. 00.>

제19조(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지 결정) ①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지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연도로부터 5년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유치를 신청한 회원시·도체육회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최종결정한다. <개정 2022. 1. 24.>

② 체육회는 유치신청 최종 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최종점검을 마치고 개최지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유치신청 회원시·도체육회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④ 위원회는 유치신청 회원시·도체육회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접수한 후 위원회가 2개 회원시·도체육회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 2022. 1. 24.>

⑤ 체육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개최한 경우도 포함)한 시·도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단,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었을 시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6., 2022. 1. 24..>

제20조(개최지 회원시·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등) ①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도와 회원시·도체육회는 체육회와 협약서(개최시기, 개최지

시도체육회 의무, 성실이행 여부, 조직위원회 구성 및 승계, 경기장 배정,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의무 등)를 체결한다. 그리고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체육회는 이사회에서 발표한 유치신청 계획서(유치목적 및 당위성, 예산, 경기장, 숙박, 홍보, 교통,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광역자치단체장과 해당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한 최종 유치신청 계획서를 개최지가 결정된 후 1주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체육회가 승인한 대회 승인조건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②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체육회는 대회 개최가 확정된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서와 유치신청 계획서에 근거한 이행 계획과 추진실적을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까지에 한정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한다. 위원회는 유치신청 계획서에 따른 사후 점검을 개최지와 함께 매년 실시해야 하고 협약서 및 유치신청 계획서에 따른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③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체육회가 제1항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최시기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개최지 광역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한 후 체육회가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④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회원시·도체육회가 제1항의 협약과 유치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시·도체육회는 협약 및 유치계획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포기한 연도부터 향후 20년간 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 등의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4.>

[제목개정 2022. 1. 24.]

제21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① 종합계획서는 개최 시·도가 대한체육회에 제출하며, 종합계획서에는 종합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실행계획(대회개요, 대회상징물, 소요예산, 종합상황실, 집행부등)을 준비한 계획서를 말한다.

<신설 2022. 1. 24.>

② 개최가 결정된 개최 시·도는 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회에 관한 종합사업계획서는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회조직위원회

제22조(목적 및 설치) 대회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며, 전국체육대회 등을 유치한 개최지는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승계할 수 있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3.>

제23조(구성시기)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1년 6개월 이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는 대축전 개최 1년 전에 구성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구성)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며, 제26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 등의 선임방법) ①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며, 위원장은 개최시·도의 회원시·도체육회장 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개정 2020. 7. 29., 2022. 1. 24.>

② 조직위원회에는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6조(개최지 집행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 시·도 관련 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개최 시·도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및 개최시·도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 7. 29.>

③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식전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환영안내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의 장의 직급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 24.]

제27조(개최지역 운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진행되는 시·군·구 개최지역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역 관계자로 개최지역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9., 개정 2022. 1. 24.>

1. 위원장은 개최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
2.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경찰서장, 개최지 시·군·구체육회 회장 및 기타 인사로 한다.
3. 운영위원은 개최지 시·군·구체육회의 이사, 감사, 개최지 종목단체의 장 및 기타인사가 위원이 된다.

② 개최지 시·군·구체육회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은 대회준비 총괄담당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4.>

제28조(해산)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종합체육대회 종료 후 해산한다. <개정 2016. 6. 16.>

제5장 경기종목

제29조(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② 정식종목이 종합채점에 반영되는 비율은 필요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3., 2018. 2. 5., 2019. 7. 24., 2022. 1. 24., 2023. 3. 23., 2023. 5. 4., 2026. 00. 00.>

1. 전국체육대회(49):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에어로빅힙합,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롤러, 요트, 근대5종, 카누, 골프, 우슈, 핀수영, 세팍타크로, 철인3종, 스쿼시, 당구, 산악, 댄스스포츠, 바둑, 수상스키웨이크 보드, 택견, 보디빌딩, 합기도, 족구
2. 전국동계체육대회(8) :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산악,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3. 전국소년체육대회(40) :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체조, 에어로빅힙합,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근대3종, 롤러, 카누, 조정, 볼링, 요트, 철인3종, 골프, 바둑, 승마, 산악, 스쿼시, 합기도, e스포츠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에 8개 미만의 시·도가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다만,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 종목은 예외로 하며, 제44조에 따라 평가회 개최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 선수 육성방안 성과 및 계획을 매년 제출·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6. 16., 2019. 1. 31., 2020. 2. 11., 2022. 1. 24.>

⑤ 제4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8개 시·도 이상 연속하여 참가해야 정식종목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44조의 평가회와 제13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정식종목 전환이 결정된 종목은 전환 결정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대회부터 적용한다.<개정 2023. 3. 23., 2026. 00. 00.>

⑥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에 3년 평균 참가 시·도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시범종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1. 24.>

⑦ 체육회는 제3항제2호의 별도 종목 기준을 정하여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구분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 5. 4.>

제30조(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종목) 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2. 1. 24., 2026. 00. 00.>

1. 10개 이상의 회원시·도체육회가 결성된 종목. 단, 10개 미만의 회원시·도체육회가 결성된 종목이라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포함되는 종목 중,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정상화 될 때까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에서 제외 또는 조정 할 수 있다.

가. 제1호 본문의 10개 시·도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3년 평균 5개 미만 시·도가 참가한 세부종목

나. 종목의 각 부별로 2년 이상 시·도의 1/2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종목

다. 대회기간 중 연속으로 2년 이상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

②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시범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 1. 24.>

1. 체육회에 회원 단체로 신규 가입하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처음 참여하는 종목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경기운영에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중 그 회원시·도체육회가 전체 시·도의 1/2이상 2/3미만이고,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

3. 대회에 참여하는 회원시·도체육회가 특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에 시범종목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종목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새로 종목별 경기를 재구성하여 정상화 될 때까지 시범종목으로 한다.

제31조(부별 및 종별, 세부종목 등)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 실시 세부 종목 등은 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6. 16.>

제32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6 장 대회임원

제33조(임원구분) 종합체육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개최지 집행임원, 개최지역 운영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 24.>

제34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 6. 16., 2017. 8. 28., 2018. 2. 5., 2020. 7. 29. 2022. 1. 24. 2023. 3. 23.>

1. 대회장은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2. 전국(동계)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명예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명예대회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 부대회장은 체육회 부회장과 개최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개최시·도 체육회장으로 한다.
4. 임원은 원로체육자문위원, 참가시·도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해당 회원종목단체장, 참가시·도 체육회장, 재외한인체육단체장, 개최시·도 해당 회원종목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10명 정도)으로 한다.
5. 집행위원장은 체육회 사무총장으로 한다.
6. 집행부위원장은 체육회 사무부총장과 개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7. 집행위원은 체육회 임원,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 직원, 개최 시·도체육회의 임원과 개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8. 소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회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몇 명으로 한다.
9. 대회운영본부는 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해당회원단체 임원)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6. 16.>

제36조(개최지 집행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 집행임원과 개최지역 운영위원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제7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37조(방송미디어 운영) ① 종합체육대회의 경기, 개·폐회식 및 공식 행사에 대한 방송·미디어 운영은 체육회가 총괄한다. <개정 2026. 00. 00.>

② 종합체육대회의 방송·미디어·콘텐츠 관련 권리의 범위, 이용 형태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00. 00.>

③ 조직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방송 제작 및 송출과 관련하여 체육회의 운영 기준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0. 00.>

[제목개정 2026. 00. 00.]

제38조(주관방송사) ①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중계방송 권리, 개·폐회식 등

행사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③ 주관방송사의 선정 및 주관방송사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주관방송사 선정과 운영에 관한 체육회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광고 등의 설치) ① 종합체육대회와 관련된 경기장 내·외부 광고, 시설 브랜딩 및 기타 상업적 표시의 운영은 체육회가 총괄한다. <개정 2020. 2. 11., 2026. 00. 00.>

② <삭제 2026. 00. 00.>

③ 광고 및 브랜딩 관련 권리의 범위, 노출 기준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 00. 00.>

④ 조직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광고 및 브랜딩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0. 00.>

제8장 삭제 <2022. 1. 24.>

제40조 삭제 <2020. 2. 11.>

제9장 대회운영

제41조(규정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육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24.>

③ 체육회와 회원단체는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 담당자)을 비롯한 참가자(관중, 지원 인력 등)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 하며, 공정한 대회를 위하여 승부조작 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3.>

제42조(참가요강 및 내규) 대회참가, 경기종목, 경기운영, 경기장, 채점 및 시상, 개·폐회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참가요강 및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6. 6. 16., 2022. 1. 24.>

제43조(기권 및 불참선수에 대한 제재) ① 종합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종합체육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회원시·도체육회를 통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5.> <개정 2022. 1.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차기 종합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2. 5.>

④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참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18. 2. 5.>

[제목개정 2022. 1. 24.]

제44조(평가회) ①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 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대회에 반영하 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평가회는 대회 개최연도 12월 31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3. 23.>

③ 전국동계체육대회의 평가회는 해당연도 대회 개최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3. 23.>

부 칙(2016. 3. 21.)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 조(기존 대회와의 동일성) 이 규정에 의한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6년 3월 27일 이전의 (구)대한체육회가 주최하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보며, 이 규정에 의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16년 3월 27일 이전의 (구)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본다.

제3 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선정된 시·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최지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시·도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도를 결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년 전까지 유치 신청 및 개최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유치 신청 및

결정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2016. 6. 16.)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9.)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8. 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31.)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관련하여 개정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2019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되는 정관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및 종목 제외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29조 제4항,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8개 미만 시도가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 및 5개 미만(3년 평균) 시도가 참가한 종목에 대해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19. 7. 24.)

제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 유지 적용 예외) 이 규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시범종목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던 축구(여일부), 카누(여고부 K-500m), 우슈(남고부 투로 장권전능), 댄스스포츠(고등부 라틴 5종목, 스탠다드 3종목, 스탠다드 5종목)에 대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예외) 이 규정 제29조 제4항 단서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8개미만 시도가 참가한 육상, 수영, 체조의 세부종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7. 29.)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예외) 이 규정 제29조제4항 단서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항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종목 전환 예외) 이 규정 제29조제4항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23. 5.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00. 0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국종합체육대회 상징마크(제7조제1항 관련)


<p>전국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p>

<p>전국소년체육대회</p>
<p>스포츠 733</p> <p>Korea Sport for All Festival 전국생활체육대축전</p>
<p>전국생활체육대축전</p>

[별표 2]

전국체육대회 · 전국동계체육대회 대회가(제9조제1항 관련)

체 육 대 회 가

윤 석 중 작사
김 회 조 작곡
김 회 조 편곡

보통속도로 힘차게

멀 치 자 세 상 에 우 리 의 의 기 불 꺾 치 자 세 상 에
만 들 자 새 기 욕 우 리 의 힘 으 로 세 우 자 새 나 라

아 아

우 리 의 슬 기 를 조 국 의 명 예 를 젊 어 진 우 리 들
우 리 의 단 결 로 새 우 는 명 빛 들 과 젊 손 잡고 나 가 는

다 리 는 가 뻗 고 말 은 침 무 겁 다
우 리 는 자 유 와 평 화 의 사 도 들

보 아 라 우 리 들 젊 고 씩 씩 한 모습

아 아 대 한 민 국 체 육 대 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가(제9조제2항 관련)

체육 소년의 노래

윤 석 중 작사
김 회 조 작곡

밝고 명랑하게 ♩=120



1. 푸 른 산 푸 른 하 늘 모두우 리차 지 다
2. 밝 은 해 밝 은 바 람 모두우 리차 지 다



푸 른 들 푸 른 - 바 다 모두우 리차 지 다
밝 은 눈 밝 은 - 웃 음 모두우 리차 지 다



보 다 세 계 보 다 높 게 보 다 빠 르 게
참 - 되 게 슬 기 록 게 아 름 답 - 게



한 것 발아 래 모 여 힘 - 을 - 기 르 자
은 누 리 쫓 은 벗 과 서 - 로 - 손 잡 자



우 리 는 몸 도 튼 튼 마 음 도 튼 튼



그 령 다 너 도 나 도 체 육 의 소 - 년

[별표 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가(제9조제3항 관련)

대회 축전가

